SRI채권 발행 체크리스트

1

│ 조달자금용도채권(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1. 조달자금 용도

점검 내용	확인
▶ 발행기관은 UoP채권으로 조달되는 자금을 UoP채권 프로젝트에 전액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은 UoP채권 프로젝트 선정시 UoP채권 유형별로 각각 개선효과가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은 UoP채권 조달자금이 사용되는 UoP채권 프로젝트의 개선 효과를 정량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은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조달자금의 용도와 개선 효과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하고, 개별 UoP채권 프로젝트가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UoP채권 프로젝트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은 UoP채권 프로젝트에 기대되는 개선효과 이외에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경우 투자자에게 그 부정적 효과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 등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 발행기관은 UoP채권 조달자금을 이미 개시된 UoP채권 프로젝트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1) 상환에 충당되는 금액(또는 비율), 2) 상환과 관련된 UoP채권 프로젝트 명칭 및 내용(또는 사업), 3) 해당 UoP채권 프로젝트의 대상기간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은 UoP채권 조달자금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u>2. 프로젝트의 평가 및 선정과정</u>

점검 내용	확인
▶ 발행기관은 사전에 투자자에게 UoP채권을 통해 달성하려는 환경 또는 사회가치 창출의 개선효과를 알려야 한다.	
▶ 발행기관은 사전에 투자자에게 UoP채권 발행 목표에 비추어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평가 및 선정할 때 판단의 근거(평가기준)를 알려야 한다.	
▶ 발행기관은 사전에 투자자에게 평가기준에 비추어 해당 프로젝트가 적절한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 동 판단의 주체 및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 발행기관은 UoP채권 프로젝트의 평가·선정에 있어서 참고하는 환경·사회가치 기준 또는 인증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은 UoP채권 프로젝트가 갖는 잠재적으로 심각할 수 있는 환경적,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적용된 절차, 관련 적격성 판단 기준 및 배제 기준이 있는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 발행기관은 UoP채권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시 환경 또는 사회가치 등의 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부서 또는 외부기관을 참여시켜 적절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은 UoP채권 프로젝트의 주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적격성을 재검증하여야 한다.	

<u>3. 조달자금 관리</u>

점검 내용	확인
▶ 발행기관은 조달자금이 UoP채권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은 조달자금 전체에 대해 적절한 방법으로 추적하여 관리해야 하며, 추적 방법은 발행기관의 내부통제절차를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	
▶ 발행기관은 UoP채권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및 투자 운용과 관련한 내용을 내부 절차에 따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증빙 문서 등을 적절히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은 UoP채권 상환시점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자금과 미사용자금의 총액이 조달자금과 일치하도록 정기적으로(적어도 1년에 1회) 확인해야 한다.	
▶ 발행기관은 미사용 자금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발행기관은 미사용 자금의 운용 방법을 사전에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은 미사용 자금을 안정성 및 유동성을 갖춘 자산에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은 미사용 자금을 UoP채권 프로젝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u>4. 사후 보고</u>

점검 내용	확인
▶ 발행기관은 UoP채권 발행 후 해당 채권에 의해 조달된 자금의 사용에 관한 최신 정보와 개선효과에 대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발행기관은 모든 조달자금이 사용될 때까지 1년에 1회 및 중대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그 내역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영향 보고(impact report)는 발행자금이 전액 배분된 이후 최소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의 공개 대상 정보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달자금을 충당한 UoP채권 프로젝트 목록 - UoP채권 프로젝트의 개요(진행상황 포함) - UoP채권 프로젝트에 사용한 금액 - UoP채권 프로젝트를 통해 예상되는 환경 또는 사회가치창출 관점에서의 개선 효과 ○ 미사용 자금의 금액 또는 비율, 사용 예정시기, 운용 방법 등 	
 ▶ 발행기관은 조달자금을 재투자에 사용한 경우, 공개 대상 정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조달자금 중 재투자에 사용된 금액(또는 비율) ○ 재투자와 관련한 UoP채권 프로젝트 명칭 및 내용(또는 사업) 	
▶ 발행기관의 정보공개는 각각의 개별 UoP채권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관계 법령, 비밀유지 계약 등의 이유로 개별 프로젝트 단위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를 모아서 공개하는 방식(포트폴리오 방식)도 가능하다.	
▶ 발행기관은 환경 또는 사회가치창출 개선 효과에 관한 정보 공개시 UoP채권 프로젝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정량 및 정성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은 개선 효과를 표시할 때에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지표를 사용하고 그 산정방식과 전제조건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은 조달자금 사용 보고(영향보고 포함)서를 발행기관의 웹사이트(상장시에는 상장거래소 포함)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u>5. 외부평가</u>

점검 내용	확인
▶ 발행기관은 UoP채권 발행을 위해 관리체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은 UoP채권 관리체계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체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발행기관은 관리체계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은 문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은 조달자금 사용 보고(영향 보고 포함)서를 외부평가기관의 외부평가를 받아 공개하는 것이 권고된다.	
▶ 발행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ICMA, CBI) 등에 부합하는 외부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외부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성실성, 공정성, 전문가로서의 능력 및 정당한 주의, 비밀 유지, 전문가로서의 행동 등 기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체계를 갖고, 외부평가 대상 분야에 대한 필요한 전문적인 경험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의 종류에 따라, 1) 사용처가 되는 UoP프로젝트가 목표로 하는 환경 또는 사회가치창출 개선효과, 2) UoP채권에 기대되는 4가지 요소의 적합성, 3) 필요에 따라서는 발행자가 특정하였던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잠재적으로 중대한 환경 또는 사회가치창출에 있어 위험성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평가의 목적, 업무 범위, 외부평가자의 자격 및 전문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검토 결과에 관한 문서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발행기관과의 이해관계(제3자) 및 이행상충 여부, 정보보호정책 등에 대한 검토 결과를 문서 등에 포함해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어떤 사항을 어떤 기준에 비추어 평가를 실시했는지 검토 결과에 문서 등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에서 평가하는 한계 사항을 검토결과의 결론에 포함한다.	

1. 핵심성과지표(KPI) 선정

점검 내용	확인
▶ 핵심성과지표(KPI)는 발행기관의 전반적인 사업과 관련이 있으며 핵심적 이며 중요한 일부이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경영 활동에 중요한 전략적 의의가 있어야 한다.	
▶ 핵심성과지표(KPI)는 일관된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거나 정량화 가능해야 한다.	
▶ 핵심성과지표(KPI)는 외부 검증이 가능해야 하며 벤치마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 발행기관은 발행기관의 과거 연간 보고서, 지속가능성 보고서 또는 비재무적 공시에 이미 포함된 핵심성과지표(KPI)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발행기관은 과거 핵심성과지표(KPI)가 공시된 적이 없는 경우 외부 검증을 완료한 최소 과거 3개년 핵심성과지표(KPI) 측정치를 가능한 범위 내로 공개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은 투자자들에게 핵심성과지표(KPI)의 선정 프로세스 및 해당 핵심성과지표(KPI)가 발행기관의 지속가능성 전략에 어떻게 부합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은 적용 가능한 범위 또는 한계와 산정방식을 포함한 명확한 핵심성과지표(KPI) 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은 핵심성과지표(KPI)의 산정 방식을 과학에 근거하거나 업계 기준에 따라 벤치마크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2.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측정

점검 내용	확인
▶ 지속가능성과목표(SPT)는 각 핵심성과지표(KPI)별 지속가능성과목 표(SPT)에 일상적인 영업(BAU)의 변화 수준을 넘어서는 중요한 수 준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성과목표(SPT)는 벤치마크 또는 외부 참조와 비교가 가능 해야 한다.	
▶ 지속가능성과목표(SPT)는 발행기관의 지속가능성·ESG전략과 일관성을 지녀야 한다.	
▶ 지속가능성과목표(SPT)는 사전 정의된 기간 내에 달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며 채권 발행 전(또는 동시)에 설정되어야 한다.	
▶ 발행기관은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설정시 발행기관이 가능한 영역에서 최소 3년치의 과거 실적이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선정하여 성과를 평 가하고 가능한 미래의 핵심성과지표(KPI) 성과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것이 권고된다.	
▶ 발행기관은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설정시 동종업계의 타사 대비 지속 가능성과목표(SPT)의 상대적인 위치나 동종업계 내 활용할 수 있고 비교가능한 기준치 또는 현재 업계나 섹터에 대한 기준치를 제시할 것이 권고된다.	
▶ 발행기관은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설정시 과학기반 시나리오, 과학적 수치, 국가·지역·국제적 공식목표 기준치, 최적방지기술 또는 환경 및 사회 관련 목표를 설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기타 대용수치를 제시 할 것이 권고된다.	
▶ 발행기관은 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목표 달성일, 예정사유, 평가빈도), 핵심성과지표(KPI) 개선을 위해 선정된 기준점 및 선정 근거, 기준점 재산정시 어떠한 이유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지속가능성과목표(SPT) 달성 방법과 달성 방법의 기여 정도에 대한 정량적 설명, 지속가능성과목표(SPT)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행기관 통제 밖에 있는 기타 주요 요인에 대해 언급하여야 한다.	

<u>3. 채권의 특성</u>

점검 내용	확인
▶ 발행기관은 핵심성과지표(KPI) 정의, 지속가능성과목표(SPT)(산정방식 포함) 및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잠재적인 재무적 및/또는 구조적 특성의 변화 등 채권에 대한 내용을 관련 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재무적 및/또는 구조적 특성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해당 특성은 기존에 설정된 특성과 비교했을 때 상응하는 의미가 있어야 하고 유의미한 수준의 수치가 권고된다.	
▶ 발행기관은 지속가능성과목표(SPT)를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계산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이유와 대체 산정 방식을 설명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은 핵심성과지표(KPI) 산정 방식의 변화, 지속가능성과목표 (SPT) 수정, 기준점 또는 핵심성과지표(KPI) 범위의 추정 조정을 야기할 수 있는 발생가능한 예외적인 사건과 중대한 변화에 대한 내용을 관련 서류에 명시하는 것이 권고된다.	
▶ 발행기관은 관리체계 외에 채권의 특성이 담긴 서류(투자설명서, 인 수계약서 등을 말한다)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u>4. 보고</u>

점검 내용	확인
 ▶ 발행기관은 다음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행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 야 하고, 회사의 웹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것이 권고된다. - 핵심성과지표(KPI)의 성과에 대한 최신 정보 - 채권의 재무적 및/또는 구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속가능성과목표 (SPT) 달성 성과, 관련 영향 및 영향의 시기를 반영한 지속가능성과목 표(SPT) 검증 보고서 - 투자자가 지속가능성과목표(SPT)의 달성 수준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정보 	
▶ 발행기관은 지속가능연계채권의 재무적 및/또는 구조적 특성이 조정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성과평가기간 동안 보고서를 최소 1 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발행기관은 지속가능성과목표(SPT) 달성 여부 등에 따라 금리가 변동 되는 경우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u>5. 검증</u>

점검 내용	확인
▶ 발행기관은 개별 핵심성과지표(KPI)별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성과 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최소 연 1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발행기관은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성과 평가 기간에 지속가능연계채권 의 재무적 및/또는 구조적 특성에 잠재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최후의 예정 된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한다.	
▶ 발행기관은 검증 결과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의 웹사이 트 등에 공개하는 것이 권고된다.	

6. 외부평가(검증 포함)

점검 내용	확인
▶ 발행기관은 지속가능연계채권 발행을 위해 발행시마다 관리체계를 작성하고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발행기관은 지속가능연계채권 관리체계를 조달자금용도채권 관리체 계와 구분하여 별도 작성하는 것이 권고된다.	
► 외부평가기관은 지속가능연계채권 관리체계가 준거원칙에 따라 작성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하여, 선정된 핵심성과지표 (KPI)의 연관성, 확고함, 신뢰성, 제시된 지속가능성과목표(SPT)의 근거 및 달성 수준, 선정된 벤치마크와 기준점과의 관련성과 신뢰성,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된 전략의 신뢰성을 평가할 것이 권고된다.	
▶ 발행기관은 채권 발행 후에 적용범위, 핵심성과지표(KPI) 산정 방식, 지속가능성과목표(SPT) 측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발행기관은 (발행전/발행후)외부평가 의뢰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ICMA, CBI) 등에 부합하는 기관을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하여 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성실성, 공정성, 전문가로서의 능력 및 정당한 주의, 비밀 유지, 전문가로서의 행동 등 기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평가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외부평가 대상 분야에 대한 필요한 전문적인 경험과 자격을 보유한 인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평가의 목적, 업무 범위, 평가자의 자격 및 전문지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평가 결과에 관한 문서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발행기관과의 이해관계(제3자) 및 이해상충 여부, 정보보호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평가 결과에 관한 문서 등에 포함 하여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어떤 사항을 어떤 기준에 비추어 평가를 실시했는지 평가 결과에 관한 문서 등에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외부평가기관은 외부평가에서 평가하는 한계사항을 평가결과의 결론 에 포함하여야 한다.	